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

과제번호	HYU-2024-213				
연구 과제명	전기차 배터리 열화속도 완화용 인공지능 기반 지연-완전충전 BMS 알고리듬				
연구 책임자	성명 소속		직위	연락처	E-mail
	노영태 공과대학 교수		교수	010-3529-9210	youngtae.noh@gmail.com
심의유형	신속심의			심의일	2024년 10월 02일
심의종류	신규				
심의결과					
	✓ 보완, 조건부승인시 결의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주시고, 이외의 내용은 수정이 불가하며 수정된 내용이 명시된 수정본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				
승인일	2024년 10월 02일			IRB 승인번호	HYUIRB-202410-001
연구기간	2024-10-02 ~ 2025-12-31			지속심의(중간보고) 여부	⊘ 해당 ○해당없음
승인유효기 간	2024-10-02 ~ 2025-10-01			종료보고 예정일	2025-12-31부터 3개월 이내
위원회 결정사항	결정사항에 대한 보완이 적절하여 승인합니다.				
상기 연구계획을 본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.					
<u> </u>					
2024년 10월 02일					
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(일) 기기 기기 기계 기관					

연구자 준수사항

- ※ 모든 연구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1.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 요구에 대해 모두 이행 및 충족될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2. 기관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한 경우 연구자는 결과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 계획을제출하여야 합니다.
- 3. 기관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연구자가 수정·보완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과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해당 과제의 심의 신청은 자동 무효가 됩니다. 따라서 연구자는 신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4. 연구자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- 5. 연구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명서 및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6.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을 사용할 시에는 사용 전에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7.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승인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연구대상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동의서 번역본은 반드시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8.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는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하며,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질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9. 연구자와 그밖에 이해당사자는 연구계획에 대한 본교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광고나 홍보,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10.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의 어떠한 변경이든 기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어떠한 응급상황에서의 변경도 즉각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- 11. 다년간에 걸친 연구인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연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12.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13.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하여야 하나 연구자가 종료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관위원회는 종료보고 안내를 이메일로 매월 통보할 것이며, 연구자는 빠른 시일 내에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.
- 14. 연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
- 15.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연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16. 기관위원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등록된 어떠한 연구대상자라도 사망, 입원,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기관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.
- 17. 연구자는 연구 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- 18. 기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19. 기관위원회가 심의한 과제에 대해 조사 및 감독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시 원활한 점검절차 진행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진행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.

본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은 IRB의 기록된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. 본 기관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. 본 연구와 이해상충(Conflict of Interest)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.